EU, 태국과 쌀 수입협약 체결

2005년 9월 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EU가 태국 쌀수입과 관련된 새로운 협정을 맺었음을 알렸다. 새로운 협약은 WTO 규정에도 합치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협약 결과 현미(husked rice), 반도정미(semi-milled rice), 도정미, 쇄미(broken rice)에 대한양허세율(bound rate)을 결정하였다. 반도정미와 도정미에 대해서는 기준수입량과 실질 수입량을 비교하여 매 6개월마다 175€/톤이나 145€/톤의조정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또한 EU는 13,500톤의 무관세 할당량(zero duty quota) 중 4,313톤을 태국에 배정할 예정이다. 쇄미에 대해서는 톤당6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reduced duty quota를 100,000톤까지 증량할방침이다.

EU 농업집행위원인 Mariann Fischer Boel은 다음과 같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쌀에 관한 양허세율이 WTO 규정에 합치하도록 하면서 EU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 이번 협상의 결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합니다."

반도정미에 대한 reduced duty는 45€/톤이며, reduced duty quota는 현행 80,000톤에서 100,000톤으로 늘어날 것이다.

배경 설명

유럽공동체는 2003년 7월 15일 WTO에 유럽공동체 양허표(EC schedule)

중 일부 조항을 GATT XXIIX항에 맞도록 수정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는 유럽공동체의 쌀 수입 규정을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WTO 회원국들과의 교섭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는 현미(HS code 1006 20), 도정미(HS code 1006 30)에 관해, 타일랜드와는 도정미, 현미에 대해, 그리고 인도 및 파키스탄과는 현미에 대한 교섭을 진행했다.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